#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94

발의연월일: 2020. 10. 5.

발 의 자: 백종헌・지성호・김용판

구자근 • 한기호 • 임이자

최춘식 • 이주환 • 서일준

이태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 등에게 해당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위생용품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의 폐기처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위생용품 회수·폐기 명령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 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위생용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용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8조 및 제32조).

#### 법률 제 호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을 "제10조제3항을"로, "그 영업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을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위생용품을 회수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거·폐기"를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11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23조제1호 및 제28조제3호 중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제32조제12호 중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거·폐기"를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생 략)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	2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 <u>제10조제3항을</u>
<u>규격을</u> 위반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u>해</u>
폐기하게 하거나 <u>그 영업자에게</u>	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한다.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u>&lt;신 설&gt;</u>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
	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u>해당 위생용품을 회수·폐기하</u>
	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u>③</u> (생 략)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에 따라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 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 획을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 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 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생용 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 급 및 그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 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 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 수할 수 있다.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

- 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 10. (생략)
- 11. <u>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거·</u> <u>폐기</u>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 설>
- 12. (생략)
- ② (생략)
- 제23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 저 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쇄) ①
<u>.</u>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u></u> 른
11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회
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위반사실의 공표)

-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한 경우
- 2. (생략)
- 제28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u>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u>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
-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11. (생략)
  - 12.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거・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13. • 14. (생략)

1.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2. (현행과 같음)
제28조(국고 보조)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제32조(벌칙)
<u>.</u>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12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회
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14. (현행과 같음)